



시 보



제1576호 2022. 12. 23.(금)

입법예고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7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22-2170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3.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개편된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분장 사무를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개편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명칭변경	기획관리국	기획청년국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교육국	
	경제산업국	경제수산환경국	
	환경수도사업단	맑은물사업단	

나. '과' 단위 개편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신 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임시기구)	큰목포기획단	
	-	청년인구과	기획청년국
	전국체전추진단(임시기구)	전국체전추진단	
분 리	교육체육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통·폐합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지역경제과	일부 업무 청년인구 과 이관
	기업유치과	"폐지"	
명칭변경	공보과	홍보과	
	정보통신과	스마트정보과	
	수산진흥과	수산산업과	
	환경보호과	기후환경과	
	환경시설관리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강증진과	건강정책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과	
	소속변경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호과	경제수산환경국
환경수도사업단 자원순환과		경제수산환경국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시설리과		기타 사업소	
도시발전사업단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건설국	
기타사업소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단	
기타사업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단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순위변경	<p><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p>	<p><기획청년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p>	
	<p><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전국체전추진단</p>	<p><관광문화교육국>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p>	
	<p><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p>	<p><경제수산환경국>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p>	
	<p><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p>	<p><안전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p>	
	<p><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p>	<p><맑은물사업단>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p>	
	<p><사업소> -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자동차등록사무소</p>	<p><사업소>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자동차등록사무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p>	

다. 단위별 업무이관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자 치 행 정 과	○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큰목포기획단
자 치 행 정 과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 * (이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u>우리시 고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u>	안 전 총 괄 과
노인장애인과	○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하당보건지소
기 획 예 산 과	○ 인구유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 ○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 ○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관리 ○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개발	청 년 인 구 과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 청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 기능경기대회 지원 ○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 ○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단속 ○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청 년 인 구 과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 ○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세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업무 	자 치 행 정 과
지 역 경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스마트정보과
자 치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 공동체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공동체활성화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동체활성화 지원 조직 육성 ○ 공동체활성화 조례, 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 공동체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업무 	지 역 경 제 과
관 광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보 건 위 생 과
문 화 예 술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인 재 육 성과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p>교육체육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p>인재육성과</p>
<p>교육체육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p>스포츠산업과</p>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 등 지도·감독 ○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회 지원 업무 ○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스포츠 이벤트 개최 ○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p>교 육 체 육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p>전 국 체 전 단 추 진 단</p>
<p>지 역 경 제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 전기설비 사후관리 ○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 유류수급 조정 	<p>기 후 환 경 과</p>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리 등)·감독 ○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 ○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감독 ○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감독 ○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감독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감독 ○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운영·지도·감독 	
기 업 유 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분양 및 지도 감독 ○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시설물 유지 관리 ○ 산단 기업유치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 산단 기업유치 지원시책 및 각종 보조금 집행 관리 ○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 ○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 대양산단 청산 관련 사항 	지 역 경 제 과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지 역 경 제 과
해 양 향 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수 산 산 업 과

라. 업무신설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큰목포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반도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 ○ 지역민 민간교류협력사업 발굴.조정 및 추진 ○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 목포신안 상생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통합시 설치법 제정 건의 ○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 및 통합시 명칭 결정 ○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자치법규 통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추진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기획 조정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 국립목포대학교병원 설립 지원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 ○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관련 업무 ○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업무 지원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 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청년인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 세라믹산업단지 청년임대용지 조성 및 관리 ○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관리 	現 기업유치과 (산단조성팀 업무)
홍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스마트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로봇,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CT융복합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정보화 S/W 사전협의 지원 ○ 새울행정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관리 	

<p>자 치 행 정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및 홍보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답례품 선정 및 지급 ○ 시민 정책 참여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운영 ○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유관 기관·단체 등 협력 업무 	
<p>관 광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의도시 브랜드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p>문 화 예 술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엑스포 기획 및 추진 	
<p>인 재 육 성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도서관 운영 관리 ○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각종 도서관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p>스 포 츠 산 업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 e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p>지 역 경 제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 ○ 신산업 분야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운영 지원 ○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지원 ○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 로드맵 수립 ○ 친환경선박 관련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 남항 교육연구지구 조성 및 활용방안 마련 ○ 첨단세라믹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사업 추진 ○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추진 ○ 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p>수 산 산 업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부산물(패류 껍데기) 관리 ○ 어업법인 관리(실태조사, 설립변경해산신고) ○ 수산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p>기 후 환 경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제에 관한 업무 ○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 과태료 업무 ○ 탄소포인트 관련업무 ○ 친환경 및 저녹스 보일러 지원업무 ○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 	
<p>안 전 총 괄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마. 실.과.소.동장 직렬조정

직 위	기 존	변 경	비 고
큰목포기획단장	-	지방행정사무관	
청년인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인재육성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스포츠산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전국체전추진단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기업유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1. ~ 12. 26.(5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26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61-270-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실장·큰목포기획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큰목포기획단) ① 큰목포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큰목포 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안반도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2.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지역민 민간교류협력사업 발굴·조정 및 추진
4.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5. 목포신안 상생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통합시 설치법 제정 건의
7.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 및 통합시 명칭 결정
8.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자치법규 통합
9.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10.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추진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기획 조정
1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14. 국립목포대학교병원 설립 지원
1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
16.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관련 업무
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업무 지원
1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 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19.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제2절의 제목 “**기획관리국**”을 “**기획청년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관리국”을 “기획청년국”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기획예산과장 · 공보과장 · 세정과장 ·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을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년인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과장 · 세정과장 ·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제92호부터 제96호까지, 제98호, 제114호, 제1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년인구과) 청년인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8.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0. 청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1. 기능경기대회 지원
12.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13.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
14.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5.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단속
16.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18.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9.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20.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
21.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22.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23.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24.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26.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27.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 28.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 29.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0.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 31.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32.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 33. 인구유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34.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
- 35.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 36.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37.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
- 38.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39.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관리
- 40.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개발
- 4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 4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 43. 세라믹산업단지 청년임대용지 조성 및 관리
- 44.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관리

제6조의 제목 “공보과”를 “홍보과”로 하고, 제목외 부분 중 “공보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제7조 제90호를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하고, 제목외 부분 중 “정보통신과장”을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78호 및 8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
- 8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

같은 조 제82호부터 제9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2.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 8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 84.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 85. 드론, 로봇,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CT융복합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8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87.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88. 정보화 S/W 사전협의 지원
- 89. 서울행정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90.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 91.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관리

제11조 제101호부터 108호까지 및 제112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98호 중 “시민소통실”을 “대외협력실”로 하고, 제99호 중 “시장에게 바란다”를 “시민소통신문고”로 한다.

같은 조 제132호부터 제13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2.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
- 133.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 134.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홍보
- 13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답례품 선정 및 지급
- 136. 시민 정책 참여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운영
- 137.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유관 기관·단체 등 협력 업무

제12조 제40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3조 제41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육료 지원대상자 결정·지원

같은 조 제6호 중 “건립사업”을 “확충사업”으로 하고, 제8호 중 “평가인증제도”를 “평가제”로 하며, 제12호 중 “불우아동”을 “저소득아동”으로 하고, 제18호 중 “비행청소년”

을 “위기청소년”으로 하며, 제39호 중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제 41호 중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하며, 제60호를 삭제 하고, 제6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목포시가족센터”로 한다.

같은 조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제4절의 제목 “관광문화체육국”을 “관광문화교육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관광문화체육국”을 “관광문화교육국”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관광과 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관광과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전국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 제62호, 제63호, 제67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맛의도시 브랜드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19조 제12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문화예술엑스포 기획 및 추진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 33.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 37. 어울림도서관 운영 관리
- 38.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39. 각종 도서관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 2.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 3.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4.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 5.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 6.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 7.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 8.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 9.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 11.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회 지원 업무
- 12.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 13.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 14.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 1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16.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17. 스포츠 이벤트 개최
- 18.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9.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 20.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 21.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 22.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 23.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 24.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 25. 스포츠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 26. e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전국체전추진단)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 2.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 3.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 4.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 5.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 6.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7.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제5절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경제수산환경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경제수산환경국”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기업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 제118호부터 제124호까지, 제176호부터 제202호까지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204호부터 제23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분양 및 지도 감독
- 20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시설물 유지 관리
- 206. 산업단지 기업유치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 207.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시책 및 각종 보조금 집행 관리
- 208.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
- 209.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 210.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 211. 대양산단 청산 관련 사항
- 212.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 213. 사회적경제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 214.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 2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 216.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
- 217.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 218. 공동체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219. 공동체활성화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20. 공동체활성화 지원 조직 육성
- 221. 공동체활성화 조례, 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 222. 공동체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223.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업무
- 224. 신산업 분야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 225.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운영 지원
- 226.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227.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228.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지원
- 229.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 로드맵 수립
- 230. 친환경선박 관련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 231. 남항 교육연구지구 조성 및 활용방안 마련
- 232. 첨단세라믹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사업 추진
- 233.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추진
- 234. 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35.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38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수산진흥과”를 “수산산업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수산진흥과장”을 “수산산업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49호부터 제5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9.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 50. 수산부산물(패류 껍데기) 관리
- 51. 어업법인 관리(실태조사, 설립변경해산신고)
- 52. 수산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 5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7. 자연보존물·자연보호 시설물 지정·조성 및 관리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관리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지원·협의 업무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변구역 관리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17. 환경백서 발간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9. 수립면허 등에 관한 업무
20. 조수·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23.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24. 영산호·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26. 공중화장실 설치·개보수 및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외달도·고하도·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제외)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신청, 준공검사 및 지도·감독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3.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37. 수질총량관리(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38.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허가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3. 수질·대기·소음·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에 관한업무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시행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점검
64.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66. 기후변화 관련 업무 전반 총괄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 및 지원
71.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72.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제에 관한 업무
73.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
7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 과태료 업무
75. 탄소포인트 관련업무
76. 친환경 및 저녹스 보일러 지원업무
77.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
7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
79.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80.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8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82.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83.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84.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85.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86. 전기설비 사후관리
87.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88. 유류수급 조정
89.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리 등)·감독
90.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
91.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92.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감독
93.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감독
94.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감독
9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96.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9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9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9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100.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101.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감독

102.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운영·지도·감독

103.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감독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단속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15. 폐기물 통계 조사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17. 폐기물 보관용기(물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1. 건설폐기물 신고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업무
-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관리(고물상)
- 39. 재활용품 수집
-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41. 재활용품 판매·세입관리
-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 중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도시계획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30조 제157호부터 제16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7.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 158.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 159.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160.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2.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3. 공원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4.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5. 도시공원조성 사업
6. 도시공원내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 시설물 훼손변상금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어린이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
10. 공원 등의 시설 공공주민 자치관리제 운영
11. 평화광장 녹지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12. 해당지구 공원 및 각종시설물 관리
13. 녹지업무 총괄관리
14. 가로수 식재 및 보호관리(기존시가지)
15. 시가지 수목보호관리
16. 시가지 수벽 조성 및 관리
17. 도시녹화 및 계획수립
18. 도시녹화(소공원, 화단, 수벽, 공한지, 녹지대) 사업계획 및 각종 도시녹화 설계서 작성
19. 시청사 수목관리 및 공공기관 녹화계획 및 실행
20. 시 산하 공공기관 조경수목 유지관리 지도
21. 건축물 조경협의 및 실행지도
22. 해당지구 가로수 및 수벽관리
23. 도로변, 철도변 수목관리
24. 완충녹지·경관녹지 조성 및 관리
25. 녹지내의 점·사용허가
26. 녹지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27. 광장내 교통섬 조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8. 꽃생산 및 육묘관리
29. 시가지 화목분 꽃 식재 및 관리
30. 가로화단 및 공한지 꽃밭 조성 관리

31. 각종 행사 꽃 조형물 설치 및 꽃 지원
32. 동 및 사업소 꽃 식재 기술지도
33. 베란다 원예사업 지도
34. 직영 육묘장 조성 및 양묘관리
35. 과 소관 특별사범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36. 산지조림 및 육림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37. 산지전용협의
38. 산지정화 및 푸른 숲 선도원 관리
39. 산지 이용에 관한 사항
40. 국공유림 관리
41. 산불방지업무
42. 임목별채, 영림계획 및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
43. 임업기술지도 및 독립가, 임업 후계자 관리
44. 임업금융 및 임업단체지도
45.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46. 산림보호감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도관리
47.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에 관한 사항
48. 산림재해 및 산사태 예방, 사방지 관리
49. 산림개발계획수립
50.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1. 희귀수목 및 보호수 관리
52. 각종 산림장비 및 물품관리
53.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
54. 유달산공원 개발사업 및 관리
55. 유달산공원 매·검포 및 세외수입 관리
56. 유달산공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
57. 유달산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8. 유달산공원내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59. 난전시설 및 특정자생식물원·조각공원 유지관리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각각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50호부터 제5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51.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52.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같은 조 제4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제4장 제1절의 제목 “환경수도사업단”을 “맑은물사업단”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남해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북항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2. 상수원조성 및 수자원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공사 설계·시공 감독
4.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계획의 연결 조정
5.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 유지
6. 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7. 급·배수관 시설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8. 급·배수관 관망도 종합관리
9. 급수전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10. 급수용구 유지관리(수도계량기 포함)
1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12. 급수탑, 소화전 기술지원 및 관리
13. 급수관계에 관한 통제
14. 급수구역내 구역계량사업 시행 지도·감독
15. 송수시설의 개량설계 및 감독
16. 송수유량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

17.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수립
18. 계량기 및 대장관리
19. 상수도 누수탐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획과 시행
20. 급·배수관 통합공사 설계·시공 감독
21. 누수방지(양·송·배수관) 및 응급개조 공사·시공 감독
22. 구역개량 유량계 유지관리
23. 부정(도수)수도 단속 업무
24. 누수신고 접수처리
25. 기계, 전기시설의 수리, 조작, 공사설계, 시공감독
26. 기계, 전기기술 지도감독
27. 조절지 및 변실 관리
28. 몽탄정수장 여과기, 중앙제어실라인 관리 운영
29. 몽탄정수장 실험실 관리운영
30. 몽탄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장치 운영 및 유지 관리
31. 정수장정수처리시설(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회수조)유지 및 청소
32. 정수장 여과지 시설관리
33. 양·정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
34. 양수·정수장 유출관에서 유입까지 유지관리(옥내 배관시설포함)
35. 자연건조장 유지관리 <개정 2019.12.30.>
36. 약품실 운영 및 약품 투입관리
37. 염소실 운영 및 염소용지 유지관리
38. 중화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영업무
39. 환경배출시설 관리운영
40.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설관리 조정협의
41.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2. 기타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
43. 수질관리검사 및 시험
44. 수질분석·연수·기술지원 등에 관한사항
45. 수질검사 민원접수 및 수수료 징수
46. 수질검사 성적서 처리 및 발송
47. 수질검사 기기 유지 관리
48. 먹는 물 및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 검사
49. 실험 폐액 처리
50. 달산수원지 시설유지관리

51. 저수조(물탱크)신고, 청소 및 위생상태 등 관리
52. 상수도 통계 조사 및 보고
5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54. 구역계량사업지구 유량계장비 유지 관리
55.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56.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57.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58.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59.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60.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61.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62.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63.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64.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65.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66.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67.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68.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69.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70.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71.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72.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73.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74.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75.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
76. 급수공사 시공명령
77. 급수전 명의변경
78.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79.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80.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81.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82.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83. 송수관로 응급복구 등 자재관리
84.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3. 하수도 조사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 하수공구 자재관리
6. 하수도 통계 및 각종자료 수집
7.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사업 시행
8. 하수도 개수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
9. 하수도 준설차 운영
10. 기존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1. 공공하수도대장 정리 및 관리
12. 비관리청 하수도 설치 허가
13. 배수시설공사 신청, 공사시행
14.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15.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16. 준설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
18. 배수펌프장 설치·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수 침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0. 하천 관리 및 하천시설물(제방, 수문, 수위 관측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
2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22. 하천공사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
23. 하천업무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총괄
24. 하천 등 골재채취 관련업무
25.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
26.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48. 하수도 배출량 조사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남해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4.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5. 하수유입·유출 수질분석 및 시험
6. 하수처리에 따른 공해방지대책 종합계획 수립
7.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9. 하수차집관로 및 차집보 유지보수
10.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시험기기 운전 및 약품처리 관리
12.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찌꺼기처리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

- 14. 중앙감시처리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
- 15. 중계 펌프장 관리 및 운전
- 16.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기기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 17. 남악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8.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북향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2. 청사 내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 3.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 4. 분뇨의 인수산화 처리에 관한 사항
- 5.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계 전기시설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7. 기계 전기시설의 수선공사, 조사 설계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 8. 하수·분뇨처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종합계획 수립
- 9. 하수·분뇨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 10.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 11. 탈수케익 분석 및 관리
- 12.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
- 13. 중계펌프장 관리 및 운전
- 14. 처리장 토목(차집관로 등)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 15. 중앙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 16.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제1항 “도시재생과장, 도시문화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를 “도시재생과장, 도시문화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절 제40조부터 제8절 5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40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절 목포자연사박물관

제44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5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절 자동차등록사무소

제4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동차(이륜차)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지도·감독
- 3. 자동차 통계업무, 전산업무
- 4. 자동차 차대 원동기 각자지정
- 5.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감독
- 6. 택시미터 검정업무
- 7. 삭도, 궤도의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 8. 기타 차량에 관한 사무
- 9.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 10.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말소
- 11. 건설기계 등록원부 비치
- 1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 13.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새김명령
- 14.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 1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 16.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 및 해지
- 17. 건설기계 정기점검
- 18. 건설기계 구조변경승인
- 19. 건설기계 적성검사 및 신고 수리
- 20. 건설기계 사용정지
- 21. 건설기계 보고, 검사 등
- 22. 건설기계 의견진술
- 23.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24. 건설기계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등
- 25.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

- 26.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
- 27. 건설기계의 폐기
- 28. 건설기계 등록말소
- 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 30. 주기장 보유확인 신청서 발급
- 31.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제한 명령
- 32. 자동차 의무보험 등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
- 3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지도·점검
- 34. 자동차의 강제처리
- 35. 자동차 검사업무 및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
- 36.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점검·정비명령
- 37. 정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
- 3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지도 전반
- 39.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청문 및 행정처분
- 40.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
- 4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
- 42. 사무소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 43.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
- 4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4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4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
- 4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 48.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
- 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
- 50.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절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48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 15. 가압장 관리
-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제50조 및 제5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일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통계 자료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보호과”를 “기후환경과”로 하고,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하며,

“도시계획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③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관광문화체육국장”을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⑦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상사하수도사업단”을 “맑은물사업단”으로 한다.

⑧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및 제2항 중 “환경수도사업단장”을 “맑은물사업단장”으로 한다.

⑨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환경수도사업단”을 “맑은물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소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를 “관리과(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 ①<u>감사실장</u>은 부시장을, 과·소·지소장은 국·소·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신 설></p>	<p>제2조(직무) ①<u>감사실장·큰목포기획단장</u>은 부시장을, 과·소·지소장은 국·소·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조의2(큰목포기획단) ① 큰목포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큰목포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안반도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2.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지역민 민간교류협력사업 발굴·조정 및 추진 4.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5. 목포신안 상생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통합시 설치법 제정 건의 7.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 및 통합시 명칭 결정 8.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자치법규 통합 9.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10.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추진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기획 조정 1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 14. 국립목포대학교병원 설립 지원
- 1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
- 16.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관련 업무
- 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업무 지원
- 1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 19.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제2절 기획관리국

제4조(기획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공보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략)

- 92. 인구유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93.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
- 94.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 95.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96.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
- 98.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

제2절 기획청년국

제4조(기획청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년인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92. <삭 제>
- 93. <삭 제>
- 94. <삭 제>
- 95. <삭 제>
- 96. <삭 제>
- 98. <삭 제>

반 구축

114.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관리

115.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개발

<신 설>

114. <삭 제>

115. <삭 제>

제5조의2(청년인구과) 청년인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8.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9.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0. 청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1. 기능경기대회 지원
12.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13.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
14.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5.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단속
16.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18.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9.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20.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
21.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22.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23.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 24.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26.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27.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 28.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 29.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0.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 31.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32.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 33. 인구유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34.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
- 35.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 36.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37.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
- 38.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39.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 관리
- 40.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개발
- 4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 4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 43. 세라믹산업단지 청년임대용지 조성 및 관리
- 44.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관리

제6조(공보과) 공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신설>

제6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현행과 같음)

23. 시정 홍보 영상 제작

<p>제7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7조 (현행과 같음)</p>
<p>90.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업무</p>	<p>90. <삭 제></p>
<p>제9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9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3. 정부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관리</p>	<p>13. <삭 제></p>
<p>14. 행정정보목록관리시스템 운영</p>	<p>14. <삭 제></p>
<p>15.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운영 관리</p>	<p>15. <삭 제></p>
<p>16.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p>	<p>16.(현행과 같음)</p>
<p>17.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지원</p>	<p>17. <삭 제></p>
<p>18. 인터넷민원처리공개시스템 운영</p>	<p>18. <삭 제></p>
<p>19. 건축행정시스템 관리 지원</p>	<p>19. <삭 제></p>
<p>78.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p>	<p>7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p>
<p>81. 뉴딜데이터사업 업무</p>	<p>8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p>
<p><신 설></p>	<p>82.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p>
	<p>8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p>
	<p>84.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p>
	<p>85. 드론, 로봇,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CT융복합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p>
	<p>8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87.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p>

<p>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88. 정보화 S/W 사전협의 지원 89. 새울행정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90.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91.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EA) 운영관리</p>
<p>98. 시민소통위원회 및 <u>시민소통실</u> 운영</p>	<p>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99. <u>“시장에게 바란다”</u> 인터넷민원 접수 및 교부처리</p>	<p>98. 시민소통위원회 및 <u>대외협력실</u> 운영</p>
<p>100.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원에 관한 사항</p>	<p>99. <u>“시민소통신문고”</u> 인터넷민원 접수 및 교부처리</p>
<p>101.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p>	<p>(현행과 같음)</p>
<p>102. 공동체활성화 종합계획 수립</p>	<p>101. <삭 제></p>
<p>103. 공동체활성화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p>	<p>102. <삭 제></p>
<p>104. 공동체활성화 지원 조직 육성</p>	<p>103. <삭 제></p>
<p>105. 공동체활성화 조례, 위원회 등 제도 기반 마련</p>	<p>104. <삭 제></p>
<p>106. 공동체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p>	<p>105. <삭 제></p>
<p>107.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업무</p>	<p>106. <삭 제></p>
<p>108. 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p>	<p>107. <삭 제></p>
<p>109. ~ 111. (생략)</p>	<p>108. <삭 제></p>
<p>112. 서남권하나되기 운동 추진</p>	<p>109. ~ 111. (현행과 같음)</p>
	<p>112. <삭 제></p>

<신 설>

- 132.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
- 133.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
- 134.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홍보
- 13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답례품 선정 및 지급
- 136. 시민 정책 참여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운영
- 137.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유관 기관·단체 등 협력 업무

제1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사회복지과) -----
-----.

40.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40. 기초연금 신청자 실태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제13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현행과 같음)

41.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41. <삭 제>

제14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여성가족과)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대상자 결정·지급

5. 보육료 지원대상자 결정·지원

6.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

6.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7. 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7. 보육발전종합계획 수립

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시행 지도

8. 보육시설 평가제 시행 지도

9. ~ 11.(생략)

9. ~ 11.(현행과 같음)

12. 불우아동 결연 및 입양위탁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아동 결연 및 입양위탁에 관한 사항

- 13. ~ 17.(생 략)
 - 18. 비행청소년선도(보호시설 퇴원자, 결연사업등)
 - 19. ~ 38.(생 략)
 - 39. 여성발전기금 관리
 - 40. 여성단체 육성지도
 - 41. 여성주간행사 추진
 - 42. ~ 59.(생 략)
 - 6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61. ~ 64. (생 략)
 - 6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66. ~ 77. (생 략)
- <신 설>

제4절 관광문화체육국

제16조(관광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62.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 63.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 64.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 65. 음식특화거리 조성
- 66.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 67.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신 설>

- 13. ~ 17.(현행과 같음)
- 18. 위기청소년선도(보호시설 퇴원자, 결연사업등)
- 19. ~ 38.(현행과 같음)
- 39. 양성평등기금 관리
- 40. 여성단체 육성지도
- 41.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 42. ~ 59.(현행과 같음)
- 60. <삭 제>
- 61. ~ 64. (현행과 같음)
- 6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66. ~ 77. (현행과 같음)
- 7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제4절 관광문화교육국

제16조(관광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전국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62. <삭 제>
- 63. <삭 제>
- 64.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 65. 음식특화거리 조성
- 66.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 67. <삭 제>
- 68. 맛의도시 브랜드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19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문화예술과) -----
-----.

12.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12. <삭 제>

13. ~ 33. (생 략)

13. ~ 33. (현행과 같음)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34. <삭 제>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35. <삭 제>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36. <삭 제>

<신 설>

42. 문화예술엑스포 기획 및 추진

<신 설>

제20조(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 33.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 37. 어울림도서관 운영 관리
- 38.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39. 각종 도서관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 설>

제20조의2(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 2.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 3.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4.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 5.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 6.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 7.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 8.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 9.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 11.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

회 지원 업무

- 12.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 13.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 14.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 1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16.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17. 스포츠 이벤트 개최
- 18.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9.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 20.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 21.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 22.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 23.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 24.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 25. 스포츠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 26. e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신 설>

제20조의3(전국체전추진단)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 2.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 3.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 4.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 5.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 6.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 7.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제5절 경제산업국

제21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기업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18.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 119.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 120.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 121.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 1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제5절 경제수산환경국

제21조(경제수산환경국) 국장은 -----,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18. <삭 제>
- 119. <삭 제>
- 120. <삭 제>
- 121. <삭 제>
- 122. <삭 제>

123.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123. <삭 제>
124.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124. <삭 제>
125. ~ 175. (생 략)	125. ~ 175. (현행과 같음)
176.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176. <삭 제>
177.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177. <삭 제>
178.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178. <삭 제>
179. 전기설비 사후관리	179. <삭 제>
180. <삭제 2019.12.30.>	180. <삭 제>
181. <삭제 2019.12.30.>	181. <삭 제>
182. <삭제 2019.12.30.>	182. <삭 제>
183.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183. <삭 제>
184. 유류수급 조정	184. <삭 제>
185.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 리 등)·감독	185. <삭 제>
186. <삭제 2019.12.30.>	186. <삭 제>
187. <삭제 2019.12.30.>	187. <삭 제>
188.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	188. <삭 제>
189. <삭제 2019.12.30.>	189. <삭 제>
190.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190. <삭 제>
191.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감독	191. <삭 제>
192.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감독	192. <삭 제>
193.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감 독	193. <삭 제>
194.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195.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 감 독	194. <삭 제> 195. <삭 제>
196. <삭제 2019.12.30.>	
19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196. <삭 제> 197. <삭 제>
19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 고	198. <삭 제>

- 19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 200.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 201.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감독
- 202.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운영·지도·감독

<신 설>

- 199. <삭 제>
- 200. <삭 제>
- 201. <삭 제>
- 202. <삭 제>
- 20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분양 및 지도 감독
- 20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시설물 유지 관리
- 206. 산업단지 기업유치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 207.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시책 및 각종 보조금 집행 관리
- 208.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 (토지 분할 등)
- 209.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 210.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 211. 대양산단 청산 관련 사항
- 212.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 213. 사회적경제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 214.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 2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 216.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
- 217.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 218. 공동체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219. 공동체활성화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20. 공동체활성화 지원 조직 육성
- 221. 공동체활성화 조례, 위원회 등 제도

기반 마련

- 222. 공동체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223.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업무
- 224. 신산업 분야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 225.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운영 지원
- 226.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227.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228.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지원
- 229.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 로드맵 수립
- 230. 친환경선박 관련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 231. 남항 교육연구지구 조성 및 활용방안 마련
- 232. 첨단세라믹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사업 추진
- 233.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사업 추진
- 234. 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35.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제23조(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36. (생략)

제23조 <삭제>

1. ~ 36. <삭제>

제24조(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
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7. (생 략)

제25조(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제26조(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제24조 <삭 제>

1. ~ 37. <삭 제>

제25조(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삭 제>

제26조(수산산업과) 수산산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 49.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 50. 수산부산물(패류 껍데기) 관리
- 51. 어업법인 관리(실태조사, 설립변경
해산신고)
- 52. 수산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 5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
용 시설 제한
-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 7. 자연보존물·자연보호 시설물 지정·조
성 및 관리

-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관리
-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지원·협의 업무
-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15. 수변구역 관리
- 16. 과 소관 특별사범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 17. 환경백서 발간
-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 20. 조수·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 23.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 24. 영산호·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 26. 공중화장실 설치·개보수 및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외달도·고하도·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제외)
-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 30.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신청, 준공검사 및 지도·감독
-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32. 분노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 33. 분노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 37. 수질총량관리(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 38.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허가
-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 43. 수질·대기·소음·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단

- 속 및 오염사고 처리
-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
-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명령
-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시행
-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점검
- 64.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 66. 기후변화 관련 업무 전반 총괄
-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7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 및 지원
- 71.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72.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제에 관한 업무
73.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
74.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 과태료 업무
75. 탄소포인트 관련업무
76. 친환경 및 저녹스 보일러 지원업무
77.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
7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
79.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80.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8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82.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83.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84.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85.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86. 전기설비 사후관리
87.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88. 유류수급 조정
89.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리 등)·감독
90.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
91.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92.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감독
93.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감독
94.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감독
9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96.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 감

독

- 9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 9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 99.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 100.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 101.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감독
- 102.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운영·지도·감독
- 103.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신 설>

제27조의3(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감독
-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단속
-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판매에 관한 사항
-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

도·점검

-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 15. 폐기물 통계 조사
-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 17. 폐기물 보관용기(플론박스 등) 보급 및 관리
-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21. 건설폐기물 신고
-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 보고
-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
행 업무
-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관리(고물상)
- 39. 재활용품 수집
-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41. 재활용품 판매·세입관리
-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압축 및 처
리 전반에 관한 사항
-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안전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기
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
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
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
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
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
다.

제28조(안전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기
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
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
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공업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건축행정과장은 지방시설사무
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
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
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

제29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30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한다.

제29조(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30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57.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 158.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운영
- 159.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 160.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 2.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 3. 공원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 4.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 5. 도시공원조성 사업
- 6. 도시공원내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7. 도시공원 시설물 훼손변상금에 관한 사항
- 8.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9. 어린이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
- 10. 공원 등의 시설 공공주민 자치관리제 운영
- 11. 평화광장 녹지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 12. 하당지구 공원 및 각종시설물 관리
- 13. 녹지업무 총괄관리
- 14. 가로수 식재 및 보호관리(기존시가

지)

- 15. 시가지 수목보호관리
- 16. 시가지 수벽 조성 및 관리
- 17. 도시녹화 및 계획수립
- 18. 도시녹화(소공원, 화단, 수벽, 공한지, 녹지대) 사업계획 및 각종 도시녹화 설계서 작성
- 19. 시청사 수목관리 및 공공기관 녹화 계획 및 실행
- 20. 시 산하 공공기관 조경수목 유지관리 지도
- 21. 건축물 조경협의 및 실행지도
- 22. 하당지구 가로수 및 수벽관리
- 23. 도로변, 철도변 수목관리
- 24. 완충녹지·경관녹지 조성 및 관리
- 25. 녹지내의 점·사용허가
- 26. 녹지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 27. 광장내 교통섬 조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8. 꽃생산 및 육묘관리
- 29. 시가지 화목분 꽃 식재 및 관리
- 30. 가로화단 및 공한지 꽃밭 조성 관리
- 31. 각종 행사 꽃 조형물 설치 및 꽃 지원
- 32. 동 및 사업소 꽃 식재 기술지도
- 33. 베란다 원예사업 지도
- 34. 직영 육묘장 조성 및 양묘관리
- 35.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 36. 산지조림 및 육림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 37. 산지전용협의
- 38. 산지정화 및 푸른 숲 선도원 관리

- 39. 산지 이용에 관한 사항
- 40. 국공유림 관리
- 41. 산불방지업무
- 42. 임목벌채, 영림계획 및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
- 43. 임업기술지도 및 독립가, 임업 후계자 관리
- 44. 임업금융 및 임업단체지도
- 45.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 46. 산림보호감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도관리
- 47.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에 관한 사항
- 48. 산림재해 및 산사태 예방, 사방지 관리
- 49. 산림개발계획수립
- 50.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51. 희귀수목 및 보호수 관리
- 52. 각종 산림장비 및 물품관리
- 53.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
- 54. 유달산공원 개발사업 및 관리
- 55. 유달산공원 매·검표 및 세외수입 관리
- 56. 유달산공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57. 유달산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58. 유달산공원내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 59. 난전시설 및 특정자생식물원·조각공원 유지관리

제35조(하부조직) ① 보건위생과장은 지

제35조(하부조직) ① 보건위생과장-----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해당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한다.

②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9. (생 략)

<신 설>

③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해당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제4장 제1절 환경수도사업단

제37조(하부조직) ①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 건강정책과장은 -----

-----.

②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9. (현행과 같음)

- 50.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 51.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 52.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해당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제4장 제1절 맑은물사업단

제37조(하부조직) ①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남해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북항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
-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 7. 자연보존물·자연보호 시설물 지정·조성 및 관리
-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관리
-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지원·협의 업무
-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15. 수변구역 관리
-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 17. 환경백서 발간
-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②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2. 상수원조성 및 수자원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 3. 상수도공사 설계·시공 감독
- 4.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계획의 연결 조정
- 5.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 유지
- 6. 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 7. 급·배수관 시설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 8. 급·배수관 관망도 종합관리
- 9. 급수전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 10. 급수용구 유지관리(수도계량기 포함)
- 1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 12. 급수탑, 소화전 기술지원 및 관리
- 13. 급수관계에 관한 통제
- 14. 급수구역내 구역계량사업 시행 지도·감독
- 15. 송수시설의 개량설계 및 감독
- 16. 송수유량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
- 17.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수립
- 18. 계량기 및 대장관리
- 19. 상수도 누수탐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획과 시행

- 20. 조수·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 23.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 24. 영산호·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 26. 공중화장실 설치·개보수 및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외달도·고하도 공중화장실 제외)
-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3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감독
-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 33. 분뇨 등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 37.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 38.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허가
-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20. 급·배수관 통합공사 설계·시공 감독
- 21. 누수방지(양·송·배수관) 및 응급개조공사·시공 감독
- 22. 구역개량 유량계 유지관리
- 23. 부정(도수)수도 단속 업무
- 24. 누수신고 접수처리
- 25. 기계, 전기시설의 수리, 조작, 공사설계, 시공감독
- 26. 기계, 전기기술 지도감독
- 27. 조절지 및 변실 관리
- 28. 몽탄정수장 여과기, 중앙제어실라인 관리 운영
- 29. 몽탄정수장 실험실 관리운영
- 30. 몽탄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장치 운영 및 유지 관리
- 31. 정수장정수처리시설(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회수조)유지 및 청소
- 32. 정수장 여과지 시설관리
- 33. 양·정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
- 34. 양수·정수장 유출관에서 유입까지 유지관리(옥내 배관시설포함)
- 35. 자연건조장 유지관리
- 36. 약품실 운영 및 약품 투입관리
- 37. 염소실 운영 및 염소용지 유지관리
- 38. 중화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영업무
- 39. 환경배출시설 관리운영
- 40.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설관리 조정 협의
- 41.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42. 기타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
- 43. 수질관리검사 및 시험
- 44. 수질분석·연수·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 43. 수질·대기·소음·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
-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명령
-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시행

- 45. 수질검사 민원접수 및 수수료 징수
- 46. 수질검사 성적서 처리 및 발송
- 47. 수질검사 기기 유지 관리
- 48. 먹는 물 및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검사
- 49. 실험 폐액 처리
- 50. 달산수원지 시설유지관리
- 51. 저수조(물탱크)신고, 청소 및 위생상태 등 관리
- 52. 상수도 통계 조사 및 보고
- 5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 54. 구역계량사업지구 유량계장비 유지관리
- 55.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 56.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57.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 58.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 59.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 60.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 61.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 62.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 63.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관리
- 64.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 65.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점검
- 64.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 66.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66.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 67.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 68.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 69.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 70.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 71.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 72.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 73.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 74.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 75.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
- 76. 급수공사 시공명령
- 77. 급수전 명의변경
- 78.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 79.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 80.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 81.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 82.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 83. 송수관로 응급복구 등 자재관리
- 84.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③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 3. 환경미화원 입면 및 지도·감독
-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③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 2.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 3. 하수도 조사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 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5. 하수공구 자재관리
- 6. 하수도 통계 및 각종자료 수집
- 7.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사업 시행

-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단속
-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판매에 관한 사항
-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 15. 폐기물 통계 조사
-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 17. 폐기물 보관용기(물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21. 건설폐기물 신고
-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 보고
-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

- 8. 하수도 개수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
- 9. 하수도 준설차 운영
- 10. 기존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 11. 공공하수도대장 정리 및 관리
- 12. 비관리청 하수도 설치 허가
- 13. 배수시설공사 신청, 공사시행
- 14.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 15.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16. 준설원 관리에 관한 사항
- 17.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
- 18. 배수펌프장 설치·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19. 해수 침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20. 하천 관리 및 하천시설물(제방, 수문, 수위 관측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
- 2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 22. 하천공사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
- 23. 하천업무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총괄
- 24. 하천 등 골재채취 관련업무
- 25.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
- 26.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 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 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 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관리
- 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정처분

-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업무
-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관리(고물상)
- 39. 재활용품 수집
-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41. 재활용품 판매·세입관리
-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30>

- 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 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 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 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 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 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 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 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 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 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 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 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 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 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 48. 하수도 배출량 조사
-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④ 남해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 진단
-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 15. 가압장 관리
-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 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2.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3.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4.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 5. 하수유입·유출 수질분석 및 시험
- 6. 하수처리에 따른 공해방지대책 종합 계획 수립
- 7.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8.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 9. 하수차집관로 및 차집보 유지보수
- 10.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 11. 각종 시험기기 운전 및 약품처리 관리
- 12.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13. 찌꺼기처리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
- 14. 중앙감시처리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
- 15. 중계 펌프장 관리 및 운전
- 16.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기기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 17. 남악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8.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⑤북향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p><u>수립 시행</u></p> <p><u>2. 상수원조성 및 수자원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u></p> <p><u>3. 상수도공사 설계·시공 감독</u></p> <p><u>4.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계획의 연결 조정</u></p> <p><u>5.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 유지</u></p> <p><u>6. 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u></p> <p><u>7. 급·배수관 시설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u></p> <p><u>8. 급·배수관 관망도 종합관리</u></p> <p><u>9. 급수전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u></p> <p><u>10. 급수용구 유지관리(수도계량기 포함)</u></p> <p><u>1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u></p> <p><u>12. 급수탑, 소화전 기술지원 및 관리</u></p> <p><u>13. 급수관계에 관한 통제</u></p> <p><u>14. 급수구역내 구역계량사업 시행 지도·감독</u></p> <p><u>15. 송수시설의 개량설계 및 감독</u></p> <p><u>16. 송수유량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u></p> <p><u>17.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수립</u></p> <p><u>18. 계량기 및 대장관리</u></p> <p><u>19. 상수도 누수탐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획과 시행</u></p> <p><u>20. 급·배수관 통합공사 설계·시공 감독</u></p> <p><u>21. 누수방지(양·송·배수관) 및 응급개조공사·시공 감독</u></p> <p><u>22. 구역개량 유량계 유지관리</u></p> <p><u>23. 부정(도수)수도 단속 업무</u></p> <p><u>24. 누수신고 접수처리</u></p> <p><u>25. 기계, 전기시설의 수리, 조작, 공사설</u></p>	<p><u>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u></p> <p><u>2. 청사 내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u></p> <p><u>3.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u></p> <p><u>4. 분뇨의 인수산화 처리에 관한 사항</u></p> <p><u>5.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u>6. 기계 전기시설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u>7. 기계 전기시설의 수선공사, 조사 설계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u></p> <p><u>8. 하수·분뇨처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종합계획 수립</u></p> <p><u>9. 하수·분뇨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u></p> <p><u>10.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u></p> <p><u>11. 탈수케익 분석 및 관리</u></p> <p><u>12.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u></p> <p><u>13. 중계펌프장 관리 및 운전</u></p> <p><u>14. 처리장 토목(차집관로 등)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u></p> <p><u>15. 중앙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u></p> <p><u>16.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u></p>
--	--

계, 시공감독

- 26. 기계, 전기기술 지도감독
- 27. 조절지 및 변실 관리
- 28. <삭제 2019.12.30.>
- 29. 몽탄정수장 여과기, 중앙제어실라인
관리 운영
- 30. 몽탄정수장 실험실 관리운영
- 31. 몽탄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장치 운
영 및 유지 관리
- 32. <삭제 2019.12.30.>
- 33. 정수장정수처리시설(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회수조)유지 및 청소
- 34. 정수장 여과지 시설관리
- 35. 양·정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
- 36. 양수·정수장 유출관에서 유입까지
유지관리(옥내 배관시설포함)
- 37. 자연건조장 유지관리
- 38. 약품실 운영 및 약품 투입관리
- 39. 염소실 운영 및 염소용지 유지관리
- 40. 중화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영업무
- 41. 환경배출시설 관리운영
- 42.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설관리 조정
협약
- 43.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44. <삭제 2019.12.30.>
- 45. 기타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
- 46. 수질관리검사 및 시험
- 47. 수질분석·연수·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8. 수질검사 민원접수 및 수수료 징수
- 49. 수질검사 성적서 처리 및 발송
- 50. 수질검사 기기 유지 관리
- 51. 먹는 물 및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

검사

- 52. <삭제 2019.12.30.>
- 53. 실험 폐액 처리
- 54. <삭제 2019.12.30.>
- 55. 달산수원지 시설유지관리
- 56. 저수조(물탱크)신고, 청소 및 위생상
태 등 관리
- 57. 상수도 통계 조사 및 보고
- 58.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 59. 구역계량사업지구 유량계장비 유지
관리
- 60.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 6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62.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 63.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
독
- 64.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 65.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관리
- 66.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
매, 기타의 계약
- 67.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
리
- 68.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 69.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
리
- 70.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
과 용지보상
- 71.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 72.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 73.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 74.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 75.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 76.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 77.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 78.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 79.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 80.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 계량기 검침원)
- 81. 급수공사 시공명령
- 82. 급수전 명의변경
- 83.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 84.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 85.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 86.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3.>
- 87.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 88. 송수관로 응급복구 등 자재관리
- 89.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⑥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9. (생 략)

제39조(하부조직) ① 도시재생과장, 도시문화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원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

⑥ <삭 제>
1. 49. <삭 제>

제39조(하부조직) ① 도시재생과장, 도시문화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

④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9. (생략)

제3절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40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
한다.

제41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
정
2.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4.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5. 하수유입·유출 수질분석 및 시험
6. 하수처리에 따른 공해방지대책 종합
계획 수립
7.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9. 하수차집관로 및 차집보 유지보수
10.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시험기기 운전 및 약품처리 관
리
12.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찌꺼기처리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
리
14. 중앙감시처리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
15. 중계 펌프장 관리 및 운전
16.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기기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④ <삭 제>

1. ~ 59. (삭 제)

제3절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40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
다.

제41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
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
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
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
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
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7. 남악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제4절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4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2. 청사 내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 3.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 4. 분뇨의 인수산화 처리에 관한 사항
- 5.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계 전기시설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7. 기계 전기시설의 수선공사, 조사 설계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 8. 하수·분뇨처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종합계획 수립
- 9. <삭제 2021.1.4.>
- 10. 하수·분뇨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 11.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 12. 탈수케익 분석 및 관리
- 13.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
- 14. 중계펌프장 관리 및 운전
- 15. 처리장 토목(차집관로 등)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7.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8.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앙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7.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제5절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 한다.

제45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 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제5절 목포자연사박물관

제44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 다.

제45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 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 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

-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21.1.4.]

- 록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제6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
한다.

제47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7.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8.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절 자동차등록사무소

제4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
다.

제47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동차(이륜차)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지도·감독
- 3. 자동차 통계업무, 전산업무
- 4. 자동차 차대 원동기 각자지정
- 5.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감독
- 6. 택시미터 검정업무
- 7. 삭도, 궤도의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 8. 기타 차량에 관한 사무
- 9.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 10.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말소
- 11. 건설기계 등록원부 비치
- 1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 13.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새김명령
- 14.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 1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 16.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및 해지
- 17. 건설기계 정기점검
- 18. 건설기계 구조변경승인

19. 건설기계 적성검사 및 신고 수리
20. 건설기계 사용정지
21. 건설기계 보고, 검사 등
22. 건설기계 의견진술
23.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24. 건설기계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등
25.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
26.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
27. 건설기계의 폐기
28. 건설기계 등록말소
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30. 주기장 보유확인 신청서 발급
31.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제한 명령
32. 자동차 의무보험 등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
3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지도·
점검
34. 자동차의 강제처리
35. 자동차 검사업무 및 기타 전반에 관
한 사항
36.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점검·정비명
령
37. 정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의 처
리 및 해임명령
3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지도 전반
39.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청문 및 행
정처분
40.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행위자 조

사, 검찰사건 송치

4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
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

42. 사무소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
한 업무

43.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

4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과징
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
항

4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
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4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통
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

4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48.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
행의 정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

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
차 관련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

50.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에 관한 사항

제7절 목포자연사박물관

제48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
한다.

제7절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48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
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
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제49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 진단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15. 가압장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지원

-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절 자동차등록사무소
 제50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절 <삭 제>
 제50조 <삭 제>
 제51조 <삭 제>

1. 자동차(이륜차)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지도·감독
3. 자동차 통계업무, 전산업무
4. 자동차 차대 원동기 각자지정
5.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감독
6. 택시미터 검정업무
7. 삭도, 궤도의 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차량에 관한 사무
9.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말소
11. 건설기계 등록원부 비치
1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13.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새김명령
14.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1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16.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 및 해지
17. 건설기계 정기점검
18. 건설기계 구조변경승인
19. 건설기계 적성검사 및 신고 수리
20. 건설기계 사용정지
21. 건설기계 보고, 검사 등
22. 건설기계 의견진술
23.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24. 건설기계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등
25.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
26.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
27. 건설기계의 폐기
28. 건설기계 등록말소

- 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 30. 주기장 보유확인 신청서 발급
- 31.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제한 명령
- 32. 자동차 의무보험 등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
- 3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지도·점검
- 34. 자동차의 강제처리
- 35. 자동차 검사업무 및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
- 36.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점검·정비명령
- 37. 정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
- 3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지도 전반
- 39.«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청문 및 행정처분
- 40.«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
- 41.«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행위자 조사, 검찰사건 송치
- 42. 사무소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 43.«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
- 44.«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45.«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4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통 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징수

4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의 정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48.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 행의 정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

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

50.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에 관한 사항

제52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 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53조(분장사무) ① 동의 분장 사무는 주민등록·인감증명 등 민원발급 업 무, 사회복지업무, 세외수입업무, 민 방위재난관리업무,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사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 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분장 사무는 시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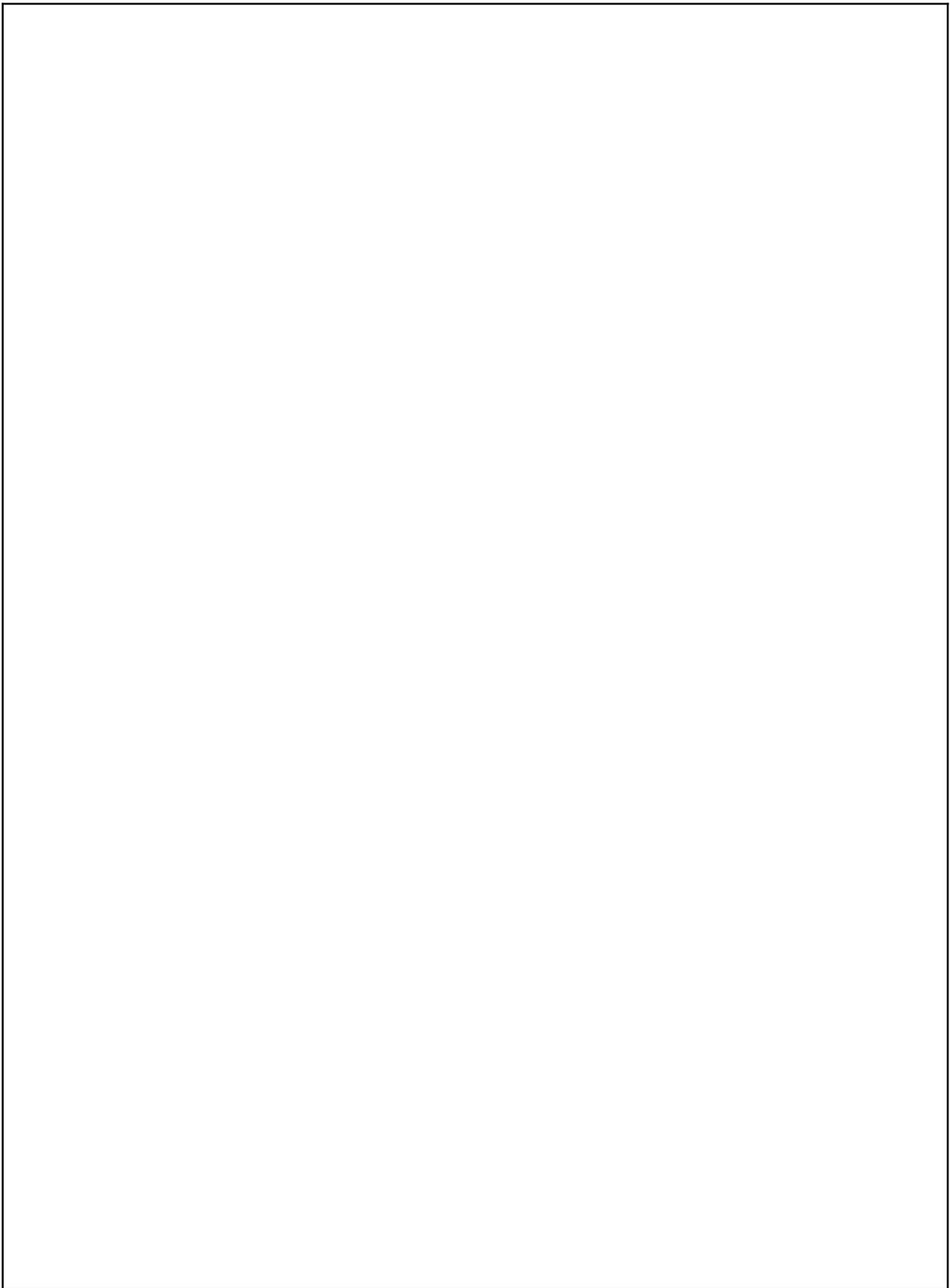
제50조(동장의 직급) -----

-----.

제51조(분장사무) ① -----

-----.

② -----
-----.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p>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목포시행정기구 설치조례	<p>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2011·6·20, 2014·5·12></p> <p>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단·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2-2171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3.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우리시 공약사업 등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직급별 불균형 해소, 소수직렬 승진 적체 해소, 정·현원 불부합 조정, 불합리한 복수직렬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 행	<u>1,367</u>	<u>605</u>	<u>29</u>	<u>104</u>	<u>313</u>	<u>316</u>
개 정	<u>1,374</u>	<u>685</u>	<u>35</u>	<u>105</u>	<u>232</u>	<u>317</u>
증 감	<u>⊕7</u>	<u>⊕80</u>	<u>⊕6</u>	<u>⊕1</u>	<u>△81</u>	<u>⊕1</u>

나.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현 행	1,367	1	1,346	17	3
개 정	1,374	1	1,353	17	3
증 감	⊕7	-	⊕7	-	-

다. 계급별 정원 조정내역
《일 반 직》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346	10	69	263	320	346	338
개 정	1,353	10	71	271	327	350	324
증 감	⊕7	-	⊕2	⊕8	⊕7	⊕4	△14

※ 정무직(1), 연구직(17), 지도직(3)은 변동없음

라.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총괄 내역
《총 괄》

직급	직렬	증.감	비 고
5급	행정+시설	⊕2	
	행정+시설	⊕2	
6급		⊕8	
	행정+보건+간호	⊕1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2	
	행정+전산+시설	⊕2	
	행정+해양수산	⊕1	
	전기운영+사무운영	⊕1	
7급		⊕7	
	간호	⊕1	소수 직렬 안배
	사회복지	⊕4	소수 직렬 안배
	운전	⊕1	소수 직렬 안배
	전산	△2	신 규 임 용
	행정	⊕3	
	행정+식품위생	⊕1	미충원 인력조정
	행정+전산	⊕1	
	위생	△2	미충원 인력조정

직급	직렬	증.감	비 고
8급		⊕4	
	운전	△1	
	공업	⊕1	
	사회복지	⊕4	소수 직렬 안배
	전기운영	△1	미충원 인력조정
	전산	⊕2	신규 임용
	행정	△1	
9급		△14	
	공업	⊕1	미충원 인력조정
	기계운영	△1	미충원 인력조정
	녹지	△1	미충원 인력조정
	보건	△1	
	사무운영	△1	소수 직렬 안배
	사서	△1	미충원 인력조정
	사회복지	△7	소수 직렬 안배
	운전	△1	소수 직렬 안배
	행정	△4	
	행정+녹지	⊕1	미충원 인력조정
	행정+사서	⊕1	미충원 인력조정

《관리기관별》

구 분	소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5급	⊕2	⊕5			△3	
소 계						
행정+공업+녹지+시설	-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	⊕1			△1	
행정+보건+환경	-	⊕1			△1	
행정+시설	⊕2	⊕2				
6급	⊕8	⊕22		⊕1	△15	
소 계						
전기운영+사무운영	⊕1	⊕1				
운전	-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	-	⊕2			△2	
행정+녹지+시설	-	⊕3			△3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	⊕1			△1	
행정+농업+녹지	-	⊕1			△1	
행정+보건+환경	-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2	⊕3			△1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환경	-	⊕5			△5	
행정+보건+간호	⊕1			⊕1		

구 분		소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7급	소 계	⊕7	⊕23	⊕6	⊕2	△25	⊕1
	공업	-	⊕2			△2	
	공업+환경	-	⊕1			△1	
	녹지	-	⊕3			△3	
	운전	⊕1	⊕8			△7	
	행정	⊕3	⊕1	⊕6 (정책지원관)		△4	
	전산	△2	△2				
	보건		△1		⊕1		
	간호	⊕1			⊕1		
	행정+전산	⊕1	⊕1				
	행정+녹지	-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환경	-	⊕3			△3	
	환경	-	⊕3			△3	
	위생	△2	△1			△1	
	사회복지	⊕4	⊕3				⊕1 (주공사업)
8급	소 계	⊕4	⊕20		△1	△15	
	공업	⊕1	⊕2			△1	
	공업+환경	-	⊕2			△2	
	녹지	-	⊕3			△3	
	시설	-	⊕1			△1	
	운전	△1	⊕5			△6	
	행정	△1	△1				
	사회복지	⊕4	⊕4				
	전산	⊕2	⊕2				
	환경	-	⊕1			△1	
	전기운영	△1				△1	
	간호		⊕1		△1		
9급	소 계	△14	⊕9		△1	△22	
	사회복지	△7	△7				
	공업	⊕1	⊕1				
	녹지	△1	⊕6			△7	
	사무운영	△1	△1				
	사서	△1	△1				
	시설	-	⊕2			△2	
	시설관리	-	⊕1			△1	
	운전	△1	⊕5			△6	
	행정	△4	△3			△1	
	보건	△1			△1		
	행정+사서	⊕1	⊕1				
	행정+시설	-	⊕1			△1	

구 분		소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행정+환경	-	⊕1			△1	
	환경	-	⊕3			△3	
	행정+녹지	⊕1				⊕1	
	기계운영	△1				△1	
지도사	농촌지도사	-	⊕1			△1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생략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제5조

5.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 수반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소 계	⊕7명			41,549,469,920	
5급	⊕2명	⊕2명	62,884,550	125,769,100	
6급	⊕8명	⊕8명	51,876,426	41501140860	
7급	⊕7명	⊕7명	46,930,900	328,516,300	
8급	⊕4명	⊕4명	42,229,350	168,917,400	
9급	△14명	△14명	41,062,410	-574,873,740	

8. 입법예고 : 2022. 12. 21. ~ 12. 26.(5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26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61-270-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계	시장						
총 계		1,374		1,374	685	35	105	232	317
정무직	계	1		1	1				
	시장	1		1	1				
일반직	계	1,353		1,353	677	35	105	219	317
	3급	1		1	1				
	4급	9		9	5	1	1	2	
	5급	71		71	31	3	3	11	23
	6급	271		271	155	5	15	49	47
	7급	327		327	189	18	18	50	52
	8급	350		350	148	7	54	60	81
	9급	324		324	148	1	14	47	114
연구직	계	17		17	4	0	0	13	0
	연구관	0		0					
	연구사	17		17	4			13	
지도직	계	3		3	3	0	0	0	0
	지도관	0		0					
	지도사	3		3	3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74	685	35	105	232	317
정무직		합계	1	1				
일반직		시장	1	1				
		일반직 합계	1,353	677	35	105	219	317
	3급	소계	1	1	0	0	0	0
		행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0
		행정	3	3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71	31	3	3	11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0	
		행정+시설	18	11	1		4	2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공업+보건+환경	1	0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0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271	155	5	15	49	47
		행정	62	34	4		2	22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3	1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시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4	12				12
		행정+전산	9	8	1			
		행정+농업+녹지	1	1			0	
		행정+환경	5	5			0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7	4			3	
		행정+시설	50	31			19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3		3
		행정+세무+시설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7	7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0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0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0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0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3	2			1	
	7급	소계	327	189	18	18	50	52
		행정	116	56	17		13	30
		세무	22	2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사회복지	39	20				19
		전산	4	2	1		1	
		방호	1				1	
		공업	25	13			12	
		농업	2	2				
		녹지	3	3			0	
		해양수산	5	5				
		보건	1	0		1		
		의료기술	0			0		
		간호	7			7		
		환경	5	3			2	
		시설	27	19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전산	4	4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4	4			0	
		행정+시설	3	2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0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0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0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5	14	0		1	
		위생	0	0			0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토목운영	0				0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0					
	8급	소계	350	148	7	54	60	81
		행정	94	45	2		17	30
		세무	11	9			2	
		사회복지	57	20				37
		숙기	3		3			
		전산	4	4				
		공업	22	7		1	14	
		농업	1	1				
		녹지	4	3			1	
		해양수산	4	4				
		보건	5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간호	34	1		33		
		환경	3	1			2	
		시설	29	19			10	
		방송통신	4	2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0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0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3	2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1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0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호	0					
		운전	14	12	1		1	
		위생	0	0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4	0			4	
		열관리운영	0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9급	소계	324	148	1	14	47	114
		행정	91	42			5	44
		세무	4	4				
		전산	5	5				
		사회복지	83	17		3		63
		사서	5	5				
		공업	25	9			16	
		농업	2	2				
		녹지	6	6			0	
		해양수산	4	4				
		보건	5			5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시설	24	21			3	
		방송통신	2	1			1	
		행정+사회복지	7					7
		행정+전산	2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2			2		
		방호	1	1				
		운전	20	10	1	3	6	
		시설관리	2	2			0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8	1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연구직		연구시합계	17	4	0	0	13	0
		학예연구사	11	3			8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시합계	3	3	0	0	0	0
		농촌지도사	3	3			0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p>	<p>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p>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관계 법령	내 용
<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p>	<p>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p>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p> <p>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p> <p>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